

“『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』 힘들지만 반드시 쟁취하자”



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수신 교육부장관(교원정책과장)
(경유)

제목 수정의견서 강득구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1. 관련:교원정책과-4181(2020.6.29.)
2.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견서(학교운영위원회 관련)를 다음 붙임과 제출합니다.

붙임 초중등교육법 입법발의 개정안 수정의견서 1부. 끝.

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



수신자

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(7.09)

담당자 수석부위원장 오 용 식 위원장 정 기 웅

협조자 협조 정책실장 정우경

시행 전북교공노 - 53 (2020.7.09) 접수

우 560-8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64-6

/ <http://www.jegeu.com>

전화 063-228-3734 전송 063-228-3735

공개

"혁신은 나부터 작은 변화로부터.."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견서

- 강득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840, 발의연월일 : 2020.06.22.)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-

의견서 제출 단체명 :
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
 (☎063-228-3734)

법률 안 (입법)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 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는 <u>학생회의 대표,</u> <u>교직원회의 대표, 제3</u> <u>4조의3에 따른 학부</u> <u>모회의 대표</u>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 다.	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 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는 <u>그 학교의 교직</u> <u>원대표 제34조의3에</u> <u>따른 학부모회의 대</u> <u>표</u> 및 지역사회 인사 로 구성한다.	○ 학생회의 대표 삭제 사유 ·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등에 미성년자인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의 중대한 결정사항 을 심의 의사결정 하기에는 역부족이며,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 회에 제시하거나,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※(참고)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- 제7호 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 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 가 등

법률 안 (입법)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8호 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 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○ 지방공무원 대표 추가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별도의 교직원회를 법률에 의해 설치할 경우 교직원회의 구성원은 교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, 교직원회의 대표 또한 교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개정의 의미가 없음. · 역할과 지위가 서로 다른 교직원들에게 각각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것임. · 「교육기본법」 제5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방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